협력사 행동규범
(Supplier Code of Conduct)

1. 목적

주식회사 아이디에이(이하 "회사")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윤리적 기업경영 실현을 위하여 **협력사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**한다.
회사는 협력사와 함께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분야의 책임을 실천하며 상생협력을 추구한다.

2. 적용범위

본 행동규범은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.
협력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, 하위 공급망에도 동일한 기준을 권장하여야 한다.

3. 윤리경영 및 준법

3.1 법규 준수

협력사는 사업 수행 국가의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⊙ **노동관계법**
- ⊙ **환경 관련 법규**
- ⊙ **개인정보 보호법 등**
- ⊙ **산업안전보건법**
- ⊙ **공정거래 관련 법규**

3.2 반부패 및 공정거래

협력사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며,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.

- ⊙ **뇌물, 금품, 향응 제공**
- ⊙ **담합 및 불공정 거래**
- ⊙ **회계 부정행위**
- ⊙ **부정청탁**
- ⊙ **허위 문서 작성**

3.3 이해상충 방지

협력사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
4. 인권 및 노동

4.1 인권 존중

협력사는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며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.

4.2 차별 금지

협력사는 다음 사유로 채용, 보상, 승진, 교육등 모든 고용과정에서 차별하지 않으며,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.

▷ **차별금지 조항 :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장애, 나이, 가족관계(혼인등), 정치적 견해, 임신 및 출산, 종교, 학력, 출신지역, 고용형태, 사회적 신분등**

4.3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
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여야 한다.

4.4 근로조건 준수

협력사는 법정 근로시간, 휴게시간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한다.

4.5 직장 내 괴롭힘 금지

폭언, 폭행,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.

4.6 결사의 자유보장

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,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.

5. 안전보건

협력사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.

⊙ **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시** ⊙ **위험성평가 실시** ⊙ **안전교육 실시**
⊙ **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** ⊙ **휴게시설 및 작업환경 관리** ⊙ **비상대응체계 구축**

6. 환경관리

협력사는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 활동을 수행,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⊙ **대기·수질·폐기물 법규 준수** ⊙ **에너지 절감 활동** ⊙ **온실가스 감축 노력**
⊙ **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** ⊙ **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저감**

7. 품질 및 제품책임

협력사는 안정된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, 허위성적서 제출 및 품질데이터 조작을 금지한다.

⊙ **품질경영체계 운영** ⊙ **원자재 이력관리** ⊙ **변경점 사전 통보**
⊙ **부적합품 관리** ⊙ **고객 요구사항 준수**

8. 정보보호

협력사는 회사의 기술자료 및 영업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⊙ **기밀정보 외부 유출 금지** ⊙ **승인 없는 정보사용 금지** ⊙ **사이버보안 관리**
⊙ **개인정보 보호**

9. 책임 있는 조달정책 수립

협력사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쟁광물과 환경 및 인권리스크가 높은 광물등에 대한 사용 저감 노력과 , 산림파괴 및 산림 황폐화를 유발하여 생산된 원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며,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⊙ 분쟁광물(Conflict Minerals) 관리: 4대 분쟁광물(3TG: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)
⊙ 확장광물(Extended Minerals) 관리: 리튬, 코발트, 운모, 니켈등
⊙ 산림파괴 미연계 원자재 조달 및 친환경 산림 인증업체 권고등 (삼림 벌채법 : EUDR 규제 여부)

10. 신고 및 고충처리

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
▶ **신고 방법: 구두 / 서면 / 이메일 / IDA 홈피 '고충처리' 체널**
▶ **처리 절차: 접수 → 조사 → 처리 → 결과 통보 → 사후관리**

⊙ **공정하고 신속한 처리** ⊙ **불이익 및 보복행위 금지** ⊙ **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**
⊙ **익명 신고 가능**

접수 E-mail : ① ilthо@ida1.co.kr ② alain@ida1.co.kr

11. 점검 및 평가

회사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음 활동을 수행, 협력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⊙ **ESG 평가** ⊙ **개선요구 및 시정조치 확인** ⊙ **문서검토**
⊙ **현장점검 및 실사**

12. 위반 시 조치

본 행동규범 위반 시 회사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⊙ **시정조치 요구** ⊙ **거래 제한** ⊙ **계약 해지** ⊙ **거래 중단**

중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.